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광규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295
----------	-------

발의연월일 : 2026. 7. 30.

발 의 자 : 광규택·조승환·박지원
김용태·유상범·신성범
김상훈·강대식·강승규
배준영·조지연·강명구
서천호·최은석·서범수
의원(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전문체육시설·생활체육시설 뿐만 아니라 체육시설업의 보호와 육성을 위하여 시설 기준에 맞는 각종 체육시설에 대해서도 설치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지역에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건강을 추구하는 지역 주민의 접근성을 높이고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지역의 인구감소를 방지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임.

그런데 인구감소지역의 인구 감소를 방지하고 주민들의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에 체육시설의 설치를 활성화하는 등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나 이에 대한 대책이 부족한 실정임.

이에 인구감소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공체육시설이나 각종 체육시설의 설치비용을 우선적으로 보조하도록 함으로써 체육시

설의 설치를 활성화하여 지역의 인구소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1항 후단 신설).

법률 제 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는 설치비용을 우선적으로 보조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5조(보조) ①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체육시 설에 대하여 설치비용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후단 신설>	제35조(보조) ① ----- ----- ----- ----- ----- . 이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 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 대해 서는 설치비용을 우선적으로 보조하여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